

한국체육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수학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1999. 11. 25.(규칙 제298호)

변경 2002. 12. 30.(규칙 제389호)

2012. 3. 28.(규칙 제596호)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와 국내·외 타 대학 간의 학생수학과 이수 학점 인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본교와 학술교류협정 관계에 있는 대학 간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

제 3 조(지원자격)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방학기간 중 3개월 미만의 수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2.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3. 당해 국가의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
가. 영어권 : TOEFL, TOEIC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성적이 만점의 100분의 60이상인 자

나. 비영어권 : 본교 별도 전형에 합격한 자

제 4 조(지원신청서류 및 시기) ①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타 대학 수학지원서 1부
2.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 추천서 1부
3. 성적증명서 1부
4. 수학계획서 1부
5. 외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6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학희망학기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본교에서 주관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5 조(수학허가인원 및 기간) ①수학허가 인원은 학부(과) 정원의 10%범위 내에서 총장이 허가한다.

②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방학기간의 수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6 조(성적 및 이수단위 인정) 성적 및 이수단위는 교류협정 등에 별도로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한다.

제 7 조(교과목의 이수) ①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전공과목이 아닌 교과목은 교양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- ②타 대학의 교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수강 신청 전에 지도교수와 학부(과)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③학점의 이수단위는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의 학칙에 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

제 8 조(학점의 인정범위 및 기준) ①학점인정의 범위는 본교 학칙에서 정한 학점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본교에서 기 이수한 동일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외국에서 이수한 어학관련 교과목은 예외로 하되, 9학점 이내로 한다.

- ②타 대학의 교과목의 이수체계, 이수단위, 성적평가 방식이 본교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별도 심의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

제 9 조(등록) ①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- ②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(성적처리 절차 등) ①타 대학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에 성적증명서, 번역문,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경유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(과)장은 이수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을 이수학점 인정 내역서에 기재하고 기한 내에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인정받은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하고 합산 처리한다

- ③타 대학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동안 수학하고 있는 대학의 학칙을 따라야 한다.

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제11조(수학허가 신청) 타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 총(학)장의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를 본교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원서류)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학허가신청서 1부
2. 성적증명서 1부
3. 총(학)장 추천서 1부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13조(지원시기 및 정원) ①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희망학기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②수학할 수 있는 인원은 학부(과) 정원의 10%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③방학기간 중의 3개월 미만의 수학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(수학허가) ①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

- ②본교에서 수학하는 자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5조(수학기간)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방학기간에만 수학하는 경우 등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6조(등록 등) ①본교 수학허가를 받은 자는 학술교류협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수강신청은 본교 학칙에 따라 해당 지도교수와 학부(과)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③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수는 본교 학칙에 따른다.

제17조(성적처리 등) ①본교에서 수학한 자가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본교

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

②<삭제>

③본교에서 수학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.

④<삭제>

제4장 보 칙

제18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교류협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 (1999. 11. 25 제298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 12. 30. 제38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3. 28. 제59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